



(www.cau.ac.kr)

#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안)

2019. 2.

교무처 학사팀

## 심의 규정

### I. 제·개정 규정

- 1.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안) ..... 1
- 2.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 ..... 3

9-38.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안)

가. 개정사유: 산학협동인턴십 학점인정 시 활동 사항에 부합하는 이수구분을 선택 가능하게 하여 학점 인정의 적합성을 제고

나. 주요내용: 전공으로만 인정되던 산학협동인턴십 활동에 대한 학점을 전공 또는 복수·융합·연계전공 학점으로 확대 인정

다. 주무부서: 교무처 학사팀

라. 관련 부서 및 협의여부: LINC 사업추진팀 협의 완료 사항

마.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현 행	개 정 안	비고																																
<p><b>제3조(구분)</b> ①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수업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tr> <td>인정과목</td> <td>산학협동인턴십</td> </tr> <tr> <td>학기</td> <td>정규학기</td> </tr> <tr> <td>신청자격</td> <td>3학년 이상 (사전 승인 시 졸업당해학기까지 신청가능)</td> </tr> <tr> <td>이수구분</td> <td>전공</td> </tr> <tr> <td>인정학점 및 이수기간</td> <td>15학점 인정(15주 이상) (단,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td> </tr> <tr> <td>성적평가</td> <td>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td> </tr> <tr> <td>학점인정학기</td> <td>해당 학기(정규학기)</td> </tr> <tr> <td>신청가능횟수</td> <td>재학 중 1회</td> </tr> </table> <p>② &lt;내용 생략&gt;</p>	인정과목	산학협동인턴십	학기	정규학기	신청자격	3학년 이상 (사전 승인 시 졸업당해학기까지 신청가능)	이수구분	전공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15학점 인정(15주 이상) (단,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신청가능횟수	재학 중 1회	<p><b>제3조(구분)</b> ①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수업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tr> <td>인정과목</td> <td>산학협동인턴십</td> </tr> <tr> <td>학기</td> <td>정규학기</td> </tr> <tr> <td>신청자격</td> <td>3학년 이상 (사전 승인 시 졸업당해학기까지 신청가능)</td> </tr> <tr> <td>이수구분</td> <td>전공 <b>(사전 승인 시 복수·융합·연계전공으로 인정 가능)</b></td> </tr> <tr> <td>인정학점 및 이수기간</td> <td>15학점 인정(15주 이상) (단,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td> </tr> <tr> <td>성적평가</td> <td>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td> </tr> <tr> <td>학점인정학기</td> <td>해당 학기(정규학기)</td> </tr> <tr> <td>신청가능횟수</td> <td>재학 중 1회</td> </tr> </table> <p>② &lt;현행과 동일&gt;</p>	인정과목	산학협동인턴십	학기	정규학기	신청자격	3학년 이상 (사전 승인 시 졸업당해학기까지 신청가능)	이수구분	전공 <b>(사전 승인 시 복수·융합·연계전공으로 인정 가능)</b>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15학점 인정(15주 이상) (단,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신청가능횟수	재학 중 1회	<p>학점 인정 시 이수 구분 선택권 확대</p>
인정과목	산학협동인턴십																																	
학기	정규학기																																	
신청자격	3학년 이상 (사전 승인 시 졸업당해학기까지 신청가능)																																	
이수구분	전공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15학점 인정(15주 이상) (단,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신청가능횟수	재학 중 1회																																	
인정과목	산학협동인턴십																																	
학기	정규학기																																	
신청자격	3학년 이상 (사전 승인 시 졸업당해학기까지 신청가능)																																	
이수구분	전공 <b>(사전 승인 시 복수·융합·연계전공으로 인정 가능)</b>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15학점 인정(15주 이상) (단,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신청가능횟수	재학 중 1회																																	
<p><b>제5조(학점인정)</b> ①~④ &lt;내용 생략&gt; ⑤ &lt;신설&gt;</p>	<p><b>제5조(학점인정)</b> ①~④ &lt;현행과 동일&gt; ⑤ <b>산학협동인턴십 수업의 이수구분은 전공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동인턴십 참여자가 복수전공 학과(부)장 또는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복수 또는 연계·융합전공으로의 이수구분 변경이 가능하다.</b></p>	<p>학점 인정 시 이수 구분 선택권 확대</p>																																
<p>&lt;신설&gt;</p>	<p><b>부칙</b> <b>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b></p>	<p>시행일 정함</p>																																

## 9-38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

2007. 9. 1. 제정  
2019. 2. 28. 개정

주무부서 : 교무처 학사팀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37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 인턴십 수업 학점인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수업이라 함은 국내·외 기업 및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전공지식을 응용하고 현장실무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진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취업경력 증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분)** ①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수업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1. ,2019.2.28. >

인정과목	산학협동인턴십	현장실습														
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방학기간 및 휴학기간)														
신청자격	3학년 이상 (사전 승인 시 졸업당해학기까지 신청가능)	3학년 이상 (단, 4학기 수료 후 당해 동계방학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학점인정 가능)  (졸업 및 수료 당해 학기에는 신청 불가)														
이수구분	전공 (사전 승인 시 복수·융합·연계전공으로 인정 가능)	자유선택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15학점 인정(15주 이상)  (단,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격으로 4학점 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실습기간</th> <th>이수구분</th> <th>인정학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단기 현장실습</td> <td>4주(160시간) 이상</td> <td rowspan="2">자유선택</td> <td>2학점</td> </tr> <tr> <td>8주(320시간) 이상</td> <td>3학점</td> </tr> <tr> <td>장기 현장실습</td> <td>12주(480시간) 이상</td> <td></td> <td>4학점</td> </tr> </tbody> </table>	구분	실습기간	이수구분	인정학점	단기 현장실습	4주(160시간) 이상	자유선택	2학점	8주(320시간) 이상	3학점	장기 현장실습	12주(480시간) 이상		4학점
구분	실습기간	이수구분	인정학점													
단기 현장실습	4주(160시간) 이상	자유선택	2학점													
	8주(320시간) 이상		3학점													
장기 현장실습	12주(480시간) 이상		4학점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계절학기														
신청가능횟수	재학 중 1회	재학 중 3회														

② 정규학기 산학협동인턴십 학교와 기업 및 기관이 사전에 소정의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한한다.

**제4조(신청절차)** ①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 실습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대학 또는 LINC사업단 창의실습지원센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3.1.>

② 산학협동인턴십 참가학생이 중간에 포기 또는 신상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최초 신청한 해당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동인턴십 참가중인 학생이 연수도중 휴학을 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대체 참가할 수 없다.

④ 학교기업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고 해당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12.13.>

**제5조(학점인정)** ①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참가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②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종료 후 2주 이내에 각종 수료증, 관련 증명서 및 현장실습보고서를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 입력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③ 산학협동인턴십 인정학점의 수강신청은 15학점으로 하며, 초과과목을 신청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각 단과대학 및 학과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세스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학점인정은 제3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⑤ 산학협동인턴십 수업의 이수구분은 전공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동인턴십 참여자가 복수전공 학과(부)장 또는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복수 또는 연계·융합전공으로의 이수구분 변경이 가능하다. <신설 2019.2.28.>

### 제6조(학생선발)

①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대상자 선발은 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주관부서는 필요시 실습자 선발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3.1.]

### 제7조 (현장실습기간 변경)

①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대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종료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기간의 10분의 9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주관부서장의 추천을 통해 각종 경진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나. 질병검사, 징·소집에 응할 때(현역복무기간은 제외)

다.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현장실습 수행이 어려울 때

라. 기타 주관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잔여기간의 현장실습이 어려울 때

[본조 신설 2016.3.1.]

**제8조(현장실습 지도)**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현장실습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가. 현장실습의 목적, 개요

나. 현장실습의 의무사항, 준수사항 및 관련 규정 숙지

다. 각종 서식 소개 및 작성방법 안내

라. 현장실습 투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안내

마. 응급 시 대처방안 안내

②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산학협력 중점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실시기간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지도를 수행해야 하며, 현장실습 지도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3.1.]

**제9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 학생은 현장실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대학교 학칙,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 실습기관의 제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은 즉시 현장실습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야 하고,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3.1.]

**제10조(현장실습 인정취소 및 징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실습기관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② 고의적으로 현장실습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④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한 자

⑤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본조 신설 2016.3.1.]

**제11조(협약사항)** 실습기관과의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기간 및 근무 시간

②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에 따른 급여조건

③ 실습생의 직무 및 직책 범위

④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기간 중 보험가입 여부

[본조 신설 2016.3.1.]

**제12조(학적적용)**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7학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국내 및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학점 인정제 시행 지침을 전부 변경방식으로 변경한다.(2008. 2. 29)

③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3.>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0.>

직제개편에 따른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기업 현장실습-1-2】 현장실습 신청서(학생용)**

부칙 <2019.2.28.>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학교기업 현장실습 신청서(학생용)				
학과명		학번		
성명		주민번호	-	
현주소	(우: - )			
연락처	Mobile			Home
	E-mail			
평균평점			군대유무	
자격증	자격증명		발급일	시행청
어학능력	영어	①회화(상,중,하) ②독해(상,중,하) ③작문(상,중,하)		
	기타( )	①회화(상,중,하) ②독해(상,중,하) ③작문(상,중,하)		
실습기간	2012. . . - 2012. . .			
현장실습 지원과목	구분	실습과목	희망분야	실습내용
	1지망			
	2지망			
자기소개 및 각오				
은행계좌	( )은행 예금주 ( ) 계좌번호 ( )			
서약 및 지원신청	본인은 현장실습 교육과정 실습생으로 본분을 지키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며,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지원 신청합니다.			
	2012년 . . . 월 . . . 일 신청인: (서명)			
지도교수 승인	위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를 승인합니다.			
	2012년 . . . 월 . . . 일 학과명: . . . . . 직위: . . . . . 성명: (서명)			

